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36호 2020. 6. 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조례 제2403호)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예천군 조례 제240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03호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를 “「지방자치

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로 한다.

제8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19조(「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1. 30.개정, 2020. 5. 1.시행)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상 해당 규칙 제명 인용 내용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04호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천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과 지역사랑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천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대책 외에 예천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재난,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 정의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제4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제5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

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내용을 규정(제6조)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마.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제7조)